

『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11월 21일

나. 발 의 자 : 양진오, 윤종호, 김근아, 김상조, 김정곤, 김인배
박교상, 안장환(8인)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일

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양 진 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영구법화 됨에 따라
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영구법화 됨에
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(조례 제714호 부칙 제2조 삭제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부서의견 : 해당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관련법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13.05.28일자로 개정됨으로 인해, 2016년 12월 31일까지였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영구법화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